

예 산 총 칙

2006 년도 [1 회추경]

* 제1조 : 2006 년도 세입 ·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 · 세출 예산 총액	일 시 차 입 한 도 액
총 계	803,240,000	24,097,200
일 반 회 계	719,800,000	21,594,000
특 별 회 계	83,440,000	2,503,2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420,000	462,600
주택사업특별회계	1,520,000	45,60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0,690,000	320,70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610,000	48,3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560,000	106,800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460,000	73,800
치수사업특별회계	920,000	27,600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340,000	40,200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610,000	18,300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5,420,000	162,600
청소사업특별회계	35,640,000	1,069,2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	4,100,000	123,000
기반시설특별회계	150,000	4,500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0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7,000백만원으로 한다.

제4조 2005년도 사고이월사업은 별첨 "사고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454,667천원으로 한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3. 배상금, 국선번호료, 법정보상금
4. 지방채 원리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 지출 경비
5. 재해 대책비
6. 반환금
7. 선거관련 경비